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

본인은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귀회에 동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며, 서울시에 아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계 약 자 명		생 년 월 일	
사 업 체 명		사업자등록번호	
사업장 주소		사업개시일	
연매출액	원	상시근로자 수	명

※ 서울시 外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통지 의무사항 확인

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원되므로 지원기간 중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이 중단됨. 따라서, 장려금 수급자는 **사업장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장 이전 사실을 통지**하여야 하는바, 만약 동 기간 내 **사업장 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장 이전 전에 기 지원한 장려금을 포함한 장려금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함을 확인함.**

20 년 월 일

위 본인 : (인)

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

<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주요내용>

- **지원대상** : 서울 소재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가입자
  -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직전(전전)연도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 필수
- **지원방법** : 매월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1만원씩 장려금 적립
  *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부금납입 시부터 적립되며, 부금 미납시에는 지원되지 않음
- **지원기간** : 노란우산공제 청약일로부터 1년간 지원 (최대 12회)
  - 단, 당해연도 서울시 예산소진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**유의사항** :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시 지급되며, 청약 후 1개월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발생일 이전까지만 지원합니다.

① 지원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가 아닌 타지역으로 변경된 경우

② 지원기간 중 폐업.사망.퇴임 등 공제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

*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정책,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